

페루 광물자원개발법제연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변호사

박진표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페루는 동, 연, 아연, 은, 금, 몰리브덴 등 주요 광물이 풍부하게 부존하고 있는 광물자원의 부국이다 (광물자원 부존현황은 아래 표 참조). 또한, 페루의 광업분야에는 외국인투자가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고 나아가 투자법제 구축, 저렴한 생산단가 등 우호적인 투자환경과 경제성을 갖추고 있어, 페루의 광업분야는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¹⁾

더욱이, 페루는 우리나라와 2011년 8월부터 정식 발효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인 점에서, 우리나라의 광물자원기업에 대해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 광물자원 부존현황(2014년 기준)

광종	단위	페루	세계	세계순위
동	1000t	68,000	700,000	3
아연	1000t	29,000	230,000	3
연	1000t	7,000	87,000	4
은	1t	98,900	530,000	1
몰리브덴	1000t	450	11,000	4
금	1t	2,100	55,000	8
주석	1t	80,000	4,800,000	9

(출처: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5))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페루의 광물자원개발에 투자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편의를 위하여, 페루 광물자원개발법제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2014 주요국 에너지·자원 현황 및 정책(2014), 299면 참조

II. 광물자원개발 관련 법규 체제

1. 헌법

페루의 헌법은 광물자원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법률에 의하여 광물자원의 개발권을 개인과 법인에게 부여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2. 일반광업법(General Mining Law)

페루에서의 광업활동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Supreme Decree 014-92-EM로 승인된 일반광업법이다. 광물의 국내 또는 해외 판매는 정부기관의 인허가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민간법인이 광물자원을 탐사, 개발 또는 선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광업부(the Ministry of Energy and Mines)의 광업회사부(the Mining Companies Registry)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일반광업법은 석유가스의 탐사생산활동을 규율하지는 않으며, 이는 the Organic Law of Hydrocarbons 및 하위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3. 기타 광업활동 관련 법규

그 밖에 광업활동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주요 법규는 아래와 같다.

- Organic Law of Sustainable Use of National Resources No. 26821
- Regulations for the General Mining Law, Supreme Decree 03-94-EM
- Regulations for Mining Procedures, Supreme Decree 018-92-EM

4. 환경 관련 법규

광업활동에 적용되는 환경 관련 주요 법규는 아래와 같다.

- General Environment Law, Law 28611
- Law of Mine Closure, Law 28090
- National Impact Assessment Law, Law 27446
- Law of the National assessment and Environmental Control System, Law 29325
- Regulations for Mine Closure, Supreme Decree 033-2005-EM
-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Mining Exploration Activities, Supreme Decree 020-2008-EM
- Environmental Protection in Mining and Metallurgy activities, Supreme Decree 016-93-EM
- Regulations for Citizen Consultation and Participation, within the Procedure for Approval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IA) in the Energy and Mine Sector, Ministerial Resolution 596-2002-EM-DM
- Regulation of the Procedure to apply the Right to Consult of the Indigenous Peoples in the Mining and Energy Sector, Supreme Decree 023-2011-EM.

III. 광물자원개발허가

1. 광업활동의 유형

일반광업법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광업활동(mining activities)으로 인정하고 있다.

- 지질조사(geological survey)
- 탐광(prospecting)
- 탐사(exploration)
- 생산(exploitation)
- 선광(beneficiation)
- 일반광업작업(general mining labor)
- 광업운송(mining transport)
- 생산광물의 판매(commercialization)

2. 광물자원개발허가의 종류

일반광업법은 광업활동 가운데 탐사, 생산, 선광, 일반광업작업 및 광업운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인허가(concession)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광업법은 지질조사, 탐광 및 생산광물의 판매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금의 불법채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의 수출을 위해서는 금 생산물이 인가된 작업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가. 탐사 및 생산허가(exploration and exploitation concession)

탐사 및 채취허가(이하 “광업허가(mining concession)”)는 최소 100 ha, 최대 1,000 ha(해양에서는 최대 10,000 ha)의 부지에 대하여 부여된다. 광업허가 보유자는 허가부지 내에서 깊이 제한 없이 광물자원을 탐사 및 생산할 수 있다. 광업허가는 탐사허가 및 생산허가를 포괄하므로, 탐사허가를 생산허가로 전환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광업허가는 금속에 대한 것과 비금속에 대한 것으로 나뉘며, 서로 간에 중복되거나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다. 금속에 대한 광업허가와 비금속에 대한 허가는 신청에 의해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

광업허가는 부지(지표)를 이용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나. 선광허가(beneficiation concession)

선광허가는 당해 허가 보유자에게 광물의 가치 있는 부분을 추출 및 농축하거나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금속을 용해·정제·제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다. 일반광업작업허가(general mining labor concession)

일반광업작업허가는 둘 이상의 광업허가 보유자에게 탐사생산활동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업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광업허가 보유자가 허가부지 내에서 광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광업작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라. 광업운송허가(mining transport concession)

광업운송허가는 당해 허가 보유자에게 광업중심지와 선광장 또는 항만 사이에 생산광물을 비전통적 방식으로 대량 연속 운송하는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광업허가 보유자에 대하여 광업운송허가 보유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없다.

3. 허가권자

광업허가권 부여권한은 The Geological, Mining and Metallurgical Institute (INGEMMET; 금속제련지질연구원)에게 있으며, INGEMMET가 광업허가등록업무도 관장하고 있다.

에너지광업부의 한 부서인 the General Directorate of Mining (DGM)은 탐사생산 프로젝트 개시에 대한 인가권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일반광업법 하의 후속 광업활동(즉, 일반광업작업, 선광 및 광업 운송)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4. 허가기간

일반광업법 상 광업허가의 허가기간은 기한이 없다. 즉, 아래 제5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한 허가는 계속 유지된다.

5. 허가 유지 및 취소

광업허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광업허가 보유자는 연간 최소생산물량 또는 투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또한 매년 헥타르 당 미화 3달러의 수수료(good standing fee)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속하여 2년 이상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광업허가는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만약 광업허가 보유자가 광업허가 부여일로부터 10년 내에 최소생산물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광업허가 보유자는 광업허가 부여일로부터 15년째까지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 이후 광업허가 보유자가 광업허가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광업허가 보유자는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최소생산물량요건 충족 미이행이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벌금의 10배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투자를 증명하여야 한다. 광업허가 보유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연속하여 2년 이상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광업허가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만약 광업허가 보유자가 광업허가 부여일로부터 20년 내에 최소생산물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광업허가는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6. 광구 반납(relinquishment)

일반광업법 상 광업허가 보유자가 일정 기간의 경과로 광구를 반납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광구 반납은 광업허가 보유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7. 광업허가의 취득

일반광업법 상, 투자자가 기 부여된 광업허가를 양수하는 방식으로 광업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다. 광업허가를 직접 양수하는 것은 물론 광업허가 보유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이러한 광업허가의 직간접적 양도에 대하여 정부의 인허가가 요구되지 않는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광업분야에서 mining option and lease agreements의 체결이 자주 이루어지며(일반광업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lessee는 탐사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며 광업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option을 보유한다.

8. 광업허가의 분할·병합

광업허가는 최소 100 ha까지 분할되거나 더 큰 규모로 병합될 수도 있다.

둘 이상이 광업허가를 보유하는 경우 광업허가 보유자는 미분리 지분(undivided shares) 형태로 광업허가를 보유하여야 한다.

9. 광업허가의 담보제공

광업허가 보유자는 광업허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담보제공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광업허가 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10. 허가 관련 규제

광물자원개발허가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차별이나 우대 없이 평등하게 부여된다.

다만, 페루 헌법 제71조는 국경 50km 내에서 외국인이 직간접적으로 광구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위반한 광구의 취득은 법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the Council of Ministers of State의 승인을 받은 Supreme Decree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법률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이상 도시지역에서는 자원개발허가가 부여될 수 없다.

페루의 자연보호지역은 문화 및 과학적 가치와 관련된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하여 명확하게 국가유산 및 공공영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특히 자연보호지역 내에서 광물자원의 생산은 금지된다. 다만, 광업활동이 자연보호지역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또한 광업활동이 보호지역의 환경 기준 및 제한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자연보호지역 내의 광업활동은 페루국가보호 서비스(SERNANP)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유적지에서 광업활동은 할 수 없다. 따라서, 광업활동을 개시하기 앞서 문화부로부터 유적지부존재증명서(Certificate of Non-Existence of Archaeological Ruins; CIRA)를 발급받아야 한다. CIRA의 유효기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고고학적 유물이 발견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광업허가 보유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정부에 유물발견사실을 알려야 하는바, 이를 해태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특수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페루 법률은 국익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유물을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11. Carry

광물자원개발과 관련하여 국가는 carry 권리 또는 option을 가지지 않는다.

12. 허가 절차 및 등록

광업허가 및 선광허가의 부여 절차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광업허가가 부여된 이후 광업허가는 광업허가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광업계약은 광업허가등록에 등록된 경우에만 국가와 제3자에게 집행할 수 있다.

IV. 토지사용

일반광업법 상, 토지의 소유권과 광물자원의 소유권은 구분되고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업허가는 부지(지표)를 이용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광업허가 보유자는 부지의 이용을 위해서 해당 부지를 소유하거나 또는 해당 부지의 소유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광업활동을 위해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을 의무가 있다.

만약 광업허가 보유자가 해당 부지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부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부지 내에서의 광업활동/시설을 수인하도록 강제하는 광업지역권 (mining easement)이 설정될 수 있다.

광업허가 보유자가 해당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광업허가 보유자는 민법(Civil Code)와 환경규제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V. 환경보호

1. 환경책임 관련 법규

광업허가 보유자는 환경법규에 따라 광업활동이나 광업시설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출이나 폐기물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나 물질이 배출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다.

광업허가 보유자의 환경책임에 관한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다.

- 일반환경법(the General Environmental Law, Law No 28611) Article III은 모든 개인 또는 단체가 환경에 대한 위험비용이나 손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용내재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책임자가 예방, 감시, 복구 및 복원, 보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 일반환경법 Article IX는 책임자에 대하여 적절한 복구, 복원 또는 보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The Law of the National Assessment and Environmental Control System, Law 29325는 책임자에 대하여 환경영향을 복구, 복원 또는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광업활동에 대한 환경규제’(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Mining Exploration Activities, Supreme Decree 020-2008-EM)은 광업허가 보유자가 광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배출, 폐기물처리, 환경악화 내지 부정적 영향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허가 보유자는 우수환경기준(good environmental standard)을 채택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광업 및 제련 활동에서의 환경보호규제’(the Regula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n Mining and Metallurgy Activities, Supreme Decree 016-93-EM) 제5조는 광업허가 보유자가 광업활동에 기인한 배출 및 폐기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광업허가 보유자는 환경영향평가에 기재되어 있는 환경보호의무를 모두 준수하고 또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나 물질을 통제, 회피 및 예방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 절차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절차는 아래와 같이 환경영향의 정도에 따라 DIA, EIA_{sd} 및 EIA_d의 세 가지 절차가 존재한다. 탐사단계는 DIA와 EIA_{sd}의 대상이 되고, 생산단계는 DIA_d의 대상이 된다.

가. Category I 프로젝트: DIA (Declaracion de Impacto Ambiental)

탐사활동이 부정적 환경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의 승인을 요하지 않고 환경영향진술(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의 승인만으로 할 수 있다.

나. Category II 프로젝트: EIA_{sd} (Estudio de Impacto Ambiental semidetallado)

탐사활동이 중간 정도의 부정적 환경영향을 미치고 간단한 조치를 통해 이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경우 약식환경영향평가(Semi-detail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기관	대상	승인절차
에너지광업부 광업총국(DGAAM)	시추공 20개 이하, 허가면적 10ha 이하, 갱도 50m 이하(이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DGAAM에 신청서 접수 → 45일 내 의결 → 결과 통보

다. Category III 프로젝트: EIAd (Estudio de Impacto Ambiental detallado)

탐사활동이 중대한 부정적 환경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세환경영향평가(Detail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기관	대상	승인절차
에너지광업부 광업총국(DGAAM)	시추공 20개 이상, 허가면적 10ha 이상, 갱도 50m 이상(이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DGAAM에 신청서 접수 → 55일 내 의결 → 결과 통보

생산단계에 대한 DIAd를 위한 검토준비사항은 아래와 같다.

- 프로젝트 지역
 - 물리적 환경: 프로젝트 지질, 기후, 공기 및 토지의 질, 지형학적 특징, 지표 및 지하수 등
 - 생물학적 환경: 해안, 안데스, 밀림 등 생태계, 식물 및 동물 분포, 동식물 서식 환경, 비농업지역, 천연림 생태보호지역, 수생 환경 등
 - 사회경제적 환경: 프로젝트 위치, 사이즈,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 인구조사(나이, 성별, 인종 등), 교육, 인프라 환경 등
 - 고증학적 환경: 고고학적 연구, 역사유물관련 여부 등
- 광업활동
 - 광업활동 계획: 환경모니터링 계획, 복구 및 관리계획 등
 - 프로젝트 요소: 사무실, 창고, 직원, 보건시설, 노천 갱내 등 광산개발 형태, 각종설비, 선광시설 및 복구, 폐기물 처리 방법 등
 - 광물가공계획: 세부 가공시설, 소음정도, 용수, 가스 공급량, 유해물 배출, 전력 수요량 등
 - 환경감시계획: 공기, 지표수 및 지하수의 질, 폐기물, 침전물 관리 등
 - 복구계획: 사면안정성, 폐수처리, 지표초목, 복구감시 및 환경관리계획 등
 - 보건위생계획: 적절한 재료사용, 위급상황대처방안, 작업장 사고 대처 등
- 광업활동 영향
 - 지역별 환경에 광업활동이 미치는 영향
- 생산활동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 물리적, 생물학적 환경 등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VI. 원주민

1993년부터 페루는 C169로 알려진 ILO협약(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nvention) 169- Convention Concerning Indigenous and Tribal People in Independent Countries-에 가입하고 있다. C169의 목적은 ① 국가의 다른 지역과 문화적 배경이 구별되어 있고 그들 고유의 전통 또는 풍속, 또는 특별법 및 규제에 따라 통치되는 독립국 내 원주민의 권리, ② 거주지가 점령될 당시 주민들의 후손으로서 고유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및 정치적 속성의 전부 또는 일부 유지하고 있는 독립국 내 원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있다.

C169 제15조는, 국가가 광물, 지하자원 기타 토지와 관련된 자원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 정부는 자원개발의 허가 또는 시행에 앞서 원주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원주민들과의 협의절차를 확립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원주민들이 자원개발의 이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자원개발로 인한 손해를 완전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한다.

2011년까지 C169는 the Regulations for Citizen Consultation and Participation에 의해, 환경영향평가 승인의 절차를 통해 적용되었다. 그런데, 페루 헌법재판소는 2011년 C169의 내용을 특별법으로 규율하도록 판결하였다. 그에 따라 페루 의회는 C169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원개발에 앞서 원주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the Law of Prior Consultation for Indigenous or Aboriginal Peoples를 제정하였다.

VII. 폐광(Decommissioning)

폐광법(the Law of Mine Closure)은 광업허가 보유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 승인 후 1년 내에 폐광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폐광계획은 각 지역 및 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광업허가 보유자는 아래와 같은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은행보증 또는 신용보험
- 현금 보증
- 신탁
- 기타페루민법 소정의 조치

또한, 폐광법은 폐광계획에 복원대책, 비용, 시간, 운영 중 통제 및 검증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VIII. 로열티

2004년 제정된 광업로열티법(the Mining Royalties, Law 28258)은 광업허가 보유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sliding scale 방식으로 생산광물의 농축가치의 1~3%를 페루 정부에 연간 로열티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 생산광물의 농축가치가 미화 6,0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1%
- 생산광물의 농축가치가 미화 6,000만 달러 초과 미화 1억 2,0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2%
- 생산광물의 농축가치가 미화 1억 2,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3%

2011년 개정된 광업로열티법(Law 29788)은 sliding scale 방식으로 광업허가 보유자의 매분기 운영이익(operating profits)의 1~12%를 매 분기 로열티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로열티는 법인세법 목적 상 공제 가능하다.

만약 광업허가 보유자가 페루 정부와 법률안정화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Law 29788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로열티 요율에 따라 로열티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Law 29790은 금속광물에 관한 광업허가 보유자로서 페루 정부와 법률안정화약정을 체결한 자가 특별기부금(special contribution)을 납부하기로 페루 정부와 약정하는 경우에는 sliding scale 방식으로 광업허가 보유자의 매 분기 운영이익의 4%~13.12%를 매 분기 로열티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 10월 중국 국영 알루미늄회사인 Chinalco의 자회사인 Chinalco Peru가 페루 정부와 특별기부금 약정을 체결하였다.

IX. 광업분야 조세 및 부담금

1. 개관

광업분야에 적용되는 페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요 조세는 아래와 같다.

가. 중앙정부의 조세

- 소득세(income tax)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
- 특별소비세(excise tax)
- 순자산에 대한 임시조세(temporary tax on net assets)
- 금융거래세(tax on financial transactions)
- 관세(customs duties)
- 특별광업세(special mining tax)

나. 지방정부의 조세

- 부동산세(real estate property tax)
- 부동산양도세(real estate transfer tax)
- 자동차세(vehicle tax)
- 지방정부진흥세(municipal promotion tax)
- 도로세(road tax)
- 지방자치단체 요금과 부담금(수수료, 권리와 면허)

2. 광업분야의 주요 조세제도

광업분야에 적용되는 페루 주요 조세제도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조세	개요
법인세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율 : 30% • 법률안정화계약을 체결한 경우 2% premium 요율이 가산됨 •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 : 배당금의 4.1% 원천징수 • 자본이득 : 30%
감가상각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 5% • 자동차 : 20% •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 20% • 기타 기계장비 : 10% • 데이터처리장비 : 25% • 기타 고정자산 : 10% • 단, 법률안정화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5%, 동산 20%
광업활동 비용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비용 : 생산개시연도의 공제 또는 생산개시연도로부터 10년간 상각 처리 • 광업허가 취득비용 : 최소물량생산 달성연도로부터 (최소생산물량을 반영한) 가채연한 동안 상각 처리 • 탐사비용(최소생산물량 달성 전 지출) : 실제지출연도의 공제 또는 최소물량생산 달성연도로부터 (최소생산물량을 반영한) 가채연한 동안 상각 처리. 매년 선택할 수 있음 • 탐사비용(최소생산물량 달성 후 지출) : 실제지출연도의 공제 또는 가채연한 동안 상각 처리 • 타당성조사 및 평가 비용 : 사전비용 또는 개발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음 • 개발비용 : 실제지출연도의 공제 또는 3년간 상각 처리 • 공공시설이용요금 :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 지역사회 투자지출 : 일정한 제한 하에 공제 가능 • 정화 및 폐광 비용 : 실제지출연도의 공제. 생산 종료 후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실제 공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 : 18% • 수출광물은 부가가치세나 관세의 적용대상이 아님. 통상적인 경우 납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나, 다른 납부세액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음 • 탐사단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일반적인 조기 환급(사전비용 및 자본재 구매 관련) 외에, 강화된 조기 환급(건설대금 및 중간재 구매 관련)을 받기 위해서는 페루 정부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사전단계에서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의 투자 확약을 하여야 함
특별광업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광물자원의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매분기 운영이익의 2~8.4%를 매 분기 특별광업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X. 법률안정화약정(Legal Stability Agreement)

헌법, 외국인투자촉진법(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Law) 및 민간투자성장에 관한 기본법(the Framework Law for the Growth of Private Investment)에 근거하여, 페루 정부는 외국투자자와 법률의 상태와 효력에 관한 계약, 이른바 법률안정화약정(legal stability agreements)을 체결할 수 있다. 법률안정화약정은 1984년 민법에 의해 규율된다.

광업분야의 투자자는 일반광업법에 따른 법률안정화약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법률안정화약정을 택일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각각의 법률안정화약정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일반광업법 상 법률안정화약정

일반광업법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유형의 법률안정화약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체결 요건, 기간 및 혜택이 상이하다. 일반광업법에 따른 법률안정화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로열티 체제,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 조세 환급 및 상계, 조세 혜택과 인센티브, 수출입규제, 외환거래, 자본 및 배당 등 해외 송금 등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 10년 약정: 350~5000톤/일 생산규모를 의도하고 또한 미화 2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경우
- 15년 약정: 5000톤/일 이상 생산규모를 의도하고 또한 미화 2,0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경우(단, 기존 운영업체가 투자하는 경우 미화 5,000만 달러 이상일 것)

2. Legislative Decrees 662 및 757 상 법률안정화약정

광업분야의 경우 미화 1,0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 내지 투자대상기업이 10년 간의 법률안정화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Legislative Decrees 662 및 757에 따른 법률안정화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자와 투자대상기업은 법인세, 외환거래, 외화송금 등에 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Legislative Decrees 662 및 757에 의한 법률안정화약정은 the Agency for the Promotion of Private Investment- Peru (PROINVERSION)과 투자자 내지 투자대상기업 간에 체결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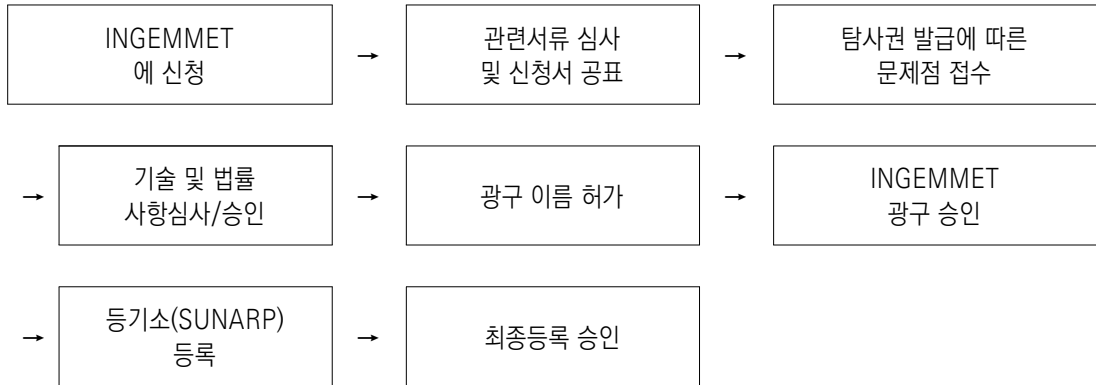
-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s, Mining Law 2016
(<http://www.iclg.co.uk/practice-areas/mining-law/mining-law-2016/peru>)
- Emil Ruppert, Peru, Minerals and mining: A Practical Global Guide, Globe Law and Business (2012)
- EY Peru, Peru's mining & metals investment guide 2014/2015 (2014)
- KPMG International, Peru - Country mining guide (2013)
-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 Industry
(http://www.hkexnews.hk/listedco/listconews/SEHK/2013/0118/03668_1526666/E114.pdf)
-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2014 주요국 에너지·자원 현황 및 정책(2014)
- 주페루 한국대사관, 페루 광물자원개발 인허가 절차(2013)

[별지 1]2)

1. 탐사허가 취득절차

신청기관	취득방법	취득조건
INGEMMET	1. 신규 탐사권 신청 2. 탐사권소멸지역 구매 3. 기존 탐사권 양도	- 개인과 기업이 동등하게 취득 - 1년 1회 세금 납부로 권리 존속 가능

■ 취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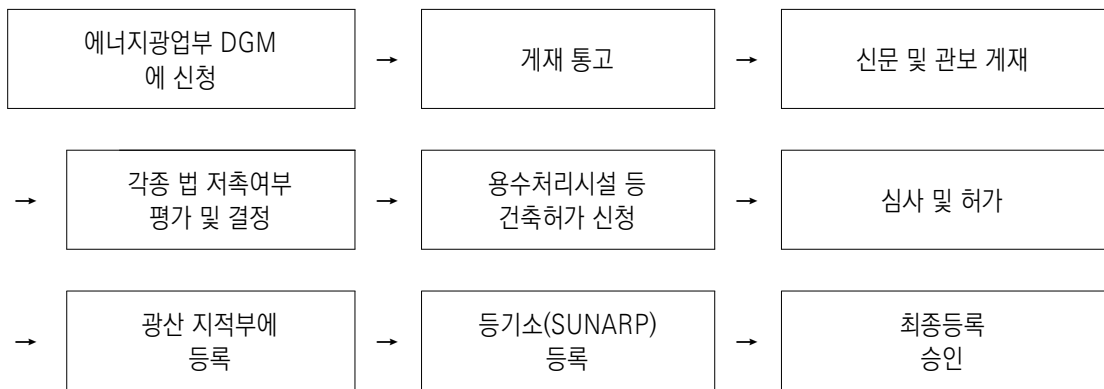


※ 소요기간: 통상 8개월에서 11개월이 소요되나 서류심사에 따른 보완 정도에 따라 소요기간 차이가 큼

2. 개발허가 취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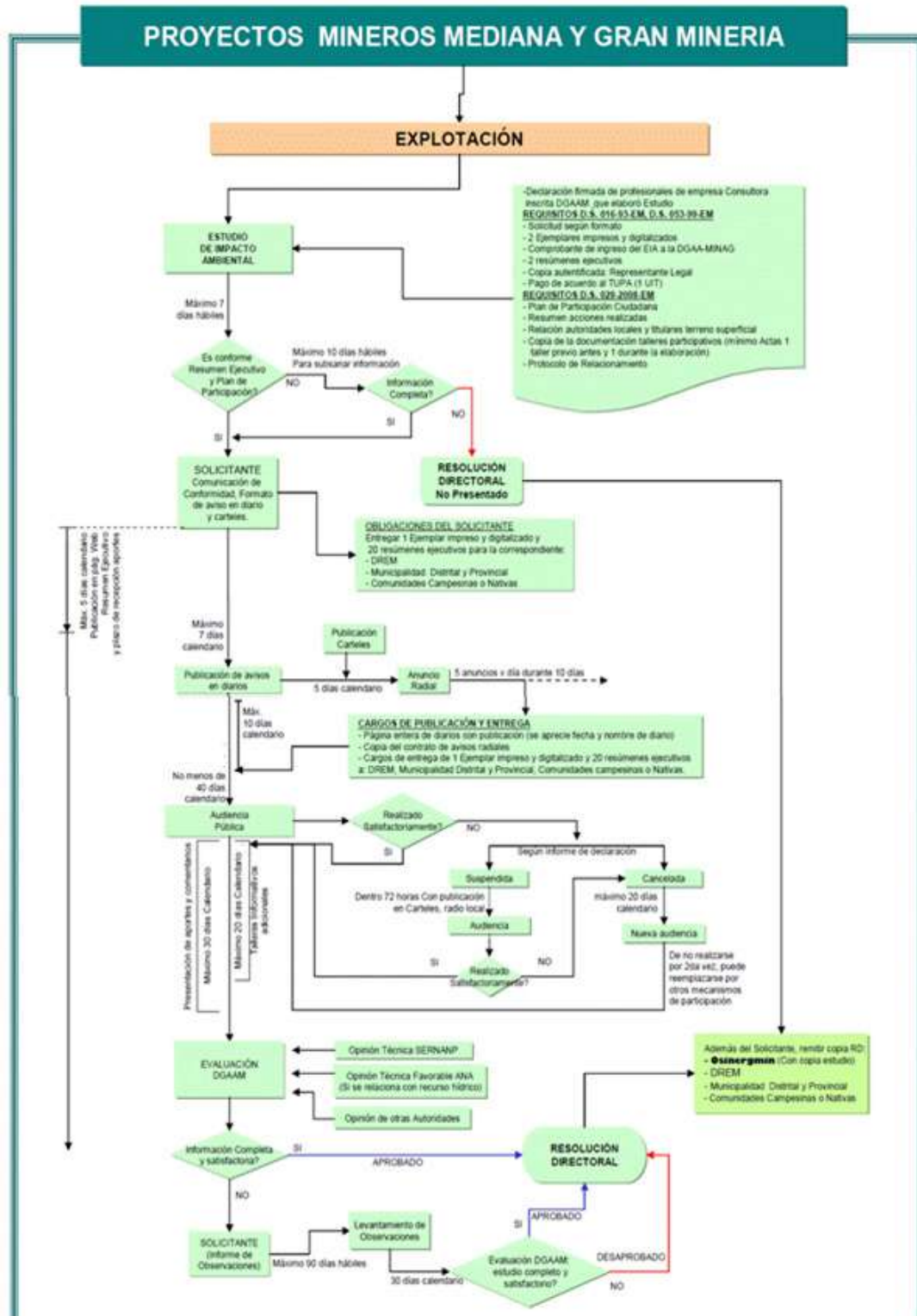
신청기관	취득방법	취득조건
에너지광업부 DGM	신청서 원본 및 사본을 일반광업법에서 규정하는 요건들을 첨부하여 제출	톤당 처리시설 규모에 따른 세금과 수수료 20% 납부

■ 취득절차



※ 소요기간: 통상 9~12개월이 소요되나 서류심사에 따른 보완 정도에 따라 소요기간 차이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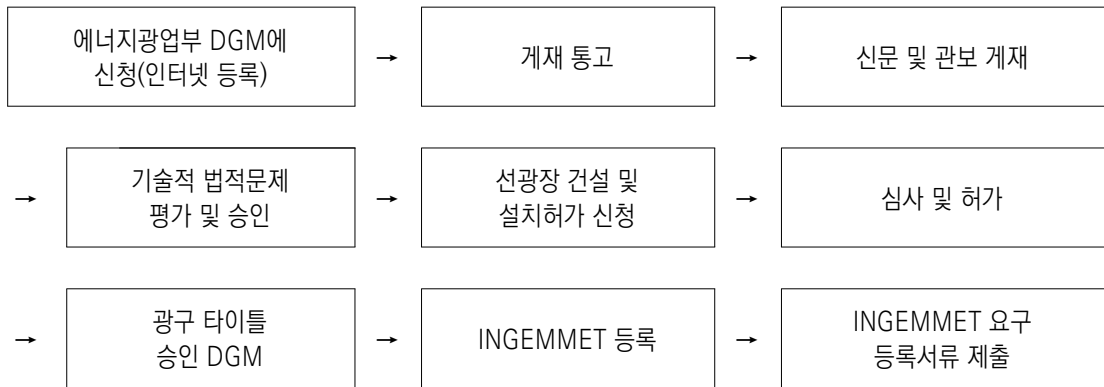
※ 붙임: 개발권 취득절차 흐름도



3. 선광허가 취득절차

신청기관	취득방법	취득조건
에너지광업부	광물의 추출, 농축, 용해, 정제, 제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에 따른 신청서, 보고서, 세금납부 - 건축기한, 재세척, 탱크 설계도 - 환경조사 접수증, 물, 토지사용허가증

■ 취득절차



[별지 2]3)

■ 토지지역권 취득방법

신청기관	취득방법	취득조건
에너지광업부 DGM	광업권자, 생산업종 종사자	1. 광업권자와 소유주가 합의(매매, 임대) 2. 정부가 소유주에게 변상 후 광업권자에게 사용권 부여

■ 취득절차



※ 소요기간: 비합의 시 통상 13~15개월 소요, 합의 시는 통상 6개월 소요되나 서류심사에 따른 보완 정도에 따라 소요기간 차이

3) 주페루 한국대사관, 페루 광물자원개발 인허가 절차(2013), 7면 인용